

의안번호	제 751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1
----------	-----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이숙애, 정영수, 이종욱,
김학철, 임헌경, 윤홍창,
이의영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최우수 제품 선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상위 법률과 위임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우선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최대화하고, 다른 교육급여 지원항목과 동일하게 정보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학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지원을 중단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등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조례」에 따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제8조)
- 나. 사이버음란물 차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생활침해 방지, 안내문구 표시, 설치통계시스템, 지원중단조건 동의 신설 및 자구를 보완하여 제2장 정보화 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제15조)
- 다. 지원대상 확대, 컴퓨터 등의 지원, 인터넷사업자 변경, 설치 통계시스템 활용을 통한 지원제한 등의 제3장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 라. 제4장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촉진, 계약정보의 공개, 최우수 물품 평가방법, BMT 준수사항, 업무·예산의 경감, 검증·제출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협의완료(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74호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컴퓨터”란 도내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정보화역기능”이란 제2조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 8.“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9조에서 제13조의 기술적 조치와 제14조의 설치통계시스템을 말한다.
- 9.“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의 기술적 안전조치, 이용습관 진단 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 10.“정보화지원컴퓨터“란 도내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정에서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지원컴퓨터와 학생용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의 종합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1.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정보화 지원
2. 학생용컴퓨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조치 및 설치통계소프트웨어의 구매규격 및 평가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부서 지정 등)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위 및 자격을 보유한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해당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역기능 예방 사무담당자는 3년 이내에 상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단체·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제9조(사이버음란물 차단)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와 학생용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시큐어소켓레이어(SSL: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 접속 프로그램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제10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와 기숙사 등 학생용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제11조(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①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와 학생용 컴퓨터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온·오프라인 게임과 인터넷의 학생 개인별 일일 최대이용 및 심야이용 제한 시간을 자동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생활 침해 방지 등) ① 교육감은 사생활 침해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한 제9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과 제10조의 게임 목록(이하 “정보화역기능목록”이라 한다) 장치(서버)를 교육감 소관 시설에 설치하지 아니 한다.

② 교육감은 중복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생활과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사이트와 SNS 등을 복호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선정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안내문구 표시) 교육감은 기술적 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4조(설치통계시스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통계(현황) 등을 설치 통계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통계(현황)
2. 기술적 조치의 설치 및 삭제 통계(현황)
3. 정보화지원컴퓨터의 사용기간 및 CPU 종류·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설치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수집·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게임·컴퓨터·인터넷의 이용시간
- ④ 교육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술적 조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치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단 동의)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단계 또는 기술적 조치의 설치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로부터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컴퓨터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정보화지원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조치의 설치 거부

제3장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

제16조(지원대상 확대) 교육감은 낙인 부작용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컴퓨터 (이하 “컴퓨터“라 한다), 정보화지원컴퓨터 고장수리, 인터넷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 ③ 교육감은 컴퓨터 지원 가정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제3호를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자동 추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경우 사용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 가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컴퓨터를 2회 이상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해당 사업자 변경은 학년 초 해당 기관 또는 관련시스템의 교육비 신청 기간과 9월 중 변경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거쳐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때

제19조(설치통계시스템 활용·지원제한) ① 교육감은 제14조의 설치통계시스템을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는 컴퓨터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낭비 개선과 컴퓨터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제1항에서 확인한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컴퓨터 고장인 경우 컴퓨터 고장수리 지원
2.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장기 미사용인 경우 인터넷사용료 지원 중단
3. 학생의 학습 목적이 아닌 스마트폰의 무선망 접속 목적 또는 결합할 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사용료 지원 중단
4. 태블릿PC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태블릿PC의 보유 여부 및 학생의 학습 목적 사용을 확인한 다음에 인터넷사용료 지원
5. 기술적 조치의 미설치 또는 삭제인 경우 인터넷사용료 지원 중단

③ 교육감은 제15조의 지원중단 조건을 부동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서 제3항의 인터넷사용료 지원 중단 가정을 컴퓨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용료 지원 대상 가정을 추가로 선정해서 그 사용료를 지원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숙사 입소 학생이 제15조제3호를 부동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인터넷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4장 최우수 물품 선정

제20조(기술개발촉진) ①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역기능목록의 수량, 기술적 안전조치의 기능과 성능, 평가 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목록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와 규격 강화에서 제외
2. 목록 수량의 평가 기준은 표본검사를 이용한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목록

제21조(계약정보의 공개) 교육감은 기술적 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구매규격 및 평가세부기준을 90일 이상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최우수 물품 평가방법 등) 교육감은 가장 우수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등의 다른 법률과 위임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라 한다. Bench Mark Test)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3. 법 제20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기술능력 평가는 BMT결과를 우선 반영하며, BMT평가 90%, 기타 평가 10%로 구성한다.
 - 나. [별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
 - 다. 교육감은 [별표]의 평가항목을 가·감 조정할 경우 그 사유와 [별표]를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4. 청소년보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 평가 10점의 합산으로 한다.

제23조(BMT 준수사항) 교육감은 BMT의 공모·조작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1. 정보화역기능목록 장치(서버)를 시험장에 설치 및 시험
2. 제안사의 공동 참관 허용. 다만, 시험을 방해하는 제안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업무·예산의 경감) 교육감은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검증) ① 교육감은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제품과 제안·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제1항, 제안서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6조(통신사업자 등의 제공 서비스·물품) 교육감은 최우수 물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간·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계약정보의 공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부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100
기 능 성	부문 소개	BMT 평가	30
	사후(URL 기반) 접속 차단	사후(URL 기반) 접속 차단 정도 · DB 기반 접속 차단	2
	사전 (알고리즘 기반) 차단	사전(알고리즘기반) 차단 정도 · DB에 없는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3
	음란·유해 SNS 계정 차단	음란· 유해 SNS의 계정 단위 차단 정도	3
	암호화적용 불법·유해 Site 차단	SSL, HTTPS, SHTTP 등 암호화가 적용된 불법· 유해 Site의 차단 정도	2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차단	PC 본체 및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정도 · 네트워크가 차단된 환경에서 음란 동영상의 차단	2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차단	-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음란영상 차단 정도 · UCC를 통한 음란동영상 차단	2
	차단성능 (게임)	사용자별 이용가능한 게임 등급별 차단 정도 · 사용자 분류(전체,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에 따른 게임 등급별 차단	3
	Plug-in 우회 접속 선별차단	Plug-in 프로그램을 이용한 우회접속 시 불법·유해사이트 및 음란· 유해 SNS 계정 차단 정도	3
	S/W기반 우회접속 차단	S/W 기반 우회접속 프로그램 Process 차단 정도	2
	Proxy Site 차단	Proxy Site 차단 정도	2
	번역기 우회접속 차단	웹 사이트 번역기의 결과 값을 통한 우회접속 차단 정도	3
	평문/암호 동시 Site 차단	HTTP와 HTTPS를 동시에 사용하는 불법·유해 사이트의 차단 정도	3
사 용 성	부문 소개	BMT 평가	20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10
	차단안내 화면	차단/이용 잔여시간을 정상적으로 표시하는지 평가	10
이 식 성	부문 소개	BMT 평가	10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 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5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	5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효율성	부문 소개	BMT 평가	20
	불법·유해 URL 보유 현황	불법·유해사이트 DB수량(유효성 검증)	10
	음란·유해 SNS계정 보유 현황	음란·유해 SNS 계정 DB수량(유효성 검증)	10
유지관리성	부문 소개	BMT 평가	10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	5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5
신뢰성	부문 소개	기타 평가	4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1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1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1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	1
공급업체 지원	부문 소개	기타 평가	6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2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	1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을 평가	1
	제품 신뢰도	GS인증의 등급과 인증취득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	2

가. 평가 결과에 0.9를 곱해 평가배점으로 환산

나. 기능성/효율성 평가부문의 각 평가항목은 5등급 상대평가 및 등급간의 배점차이 통일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 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청소년 보호법(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제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제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2016.5.29.>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⑧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시험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일 기관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우선 적용 : 강행 규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고시 제2017-7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고시 제2017-14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전자정부법(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고시 제2017-1호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8.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7호 타개정 2017. 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령 제10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법률 타법개정 2017. 8. 24.)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 (Good Software)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일부개정 2017. 2.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관리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 이상은 강행 규정